

창원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가단1168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현빈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 18.

판 결 선 고 2022. 2. 1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임야 7240㎡에 관하여 2019. 3.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임야 724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3. 26.
접수 제104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3. 21. B와 사이에 B의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원금 15,000,000원, 보증기한 2014. 3. 21.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위 신용보증약정은 그 후 보증기한이 2020. 3. 20.까지로 변경되었다),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고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3) B가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2019. 6. 1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0. 1. D은행에 7,620,8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B는 2019. 3. 25.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임야 72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3. 26. 접수 제10434호로 채권최고액을 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권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3. 25.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2019. 6. 1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9. 3. 25.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는 실제로 2019. 10.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B는 적극재산으로 시가 23,168,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E 주식회사에 대한 원금 10,846,582원의 카드대금채무, F조합에 대한 원금 4,190,000원의 대출금 채무, G 주식회사에 대한 4,741,286원의 대출금 채무, D은행에 대한 7,500,000원의 대출금 채무, H 주식회사에 대한 3,210,962원의 채무, I 주식회사에 대한 878,45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사실은 갑 4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 F조합, G 주식회사, D은행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가 피고와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